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강남대학교

창학이념

본교는 기독교 정신과 흥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진리·자유·평등·평화·복지를 추구하며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 훈

敬 天 愛 人

교육목적

본교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연마하여 민족과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교양인 양성
- 전문인 양성
- 봉사인 양성



CONTENTS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
2. 전형일정	5
3.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5
4. 지원자격	9
5. 지원자격 심사기준	10
6. 전형방법	13
7. 제출서류	14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환불 안내	17
9. 그 밖에 수험생 유의사항	18
10. 각종양식	19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세부전공		
주간	부총장 직속	자유전공학부	122	25
	복지융합대학	복지융합대학	116	
	경영관리대학	상경학부	136	
		법행정세무학부	92	
	글로벌문화 콘텐츠대학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147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99	
		인공지능융합공학부	99	
		전자반도체공학부	97	
		부동산건설학부	110	
야간	부총장 직속	자유전공학부(야)	26	4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야)	46	
	경영관리대학	상경학부(야)	84	
		법행정세무학부(야)	67	
주간	예체능대학	디자인학과	65	미선발
		체육학과	43	
		음악학과	27	
	사범대학	교육학과	32	
		유아교육과	45	
		초등특수교육과	19	
		중등특수교육과	19	
	합 계			1,491
				29

- ※ ① 모집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모집함
-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함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24.07.08.(월) 10:00 ~ 07.12.(금) 17:00까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서류제출	2024.07.23.(화) 17:00까지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합격자 발표	2024.12.13.(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문서등록 기간	2024.12.16.(월) ~ 12.18.(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서류를 통한 등록여부 확정 의사표현)-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등록기간 중 미등록자는 합격을 취소함
추가 합격자 발표	2024.12.19.(목) ~ 12.26.(목) 18:00까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3~5차는 추가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등록	2024.12.20.(금) ~ 12.27.(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최종등록금 납부기간	2025.02.10.(월) ~ 02.12.(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전형료

구 분	접수기간	전형료
전 모집단위	2024.07.08.(월) 10:00 ~ 07.12.(금) 17:00까지	100,000원

1) 전형료 반환

- 가) 원서접수를 완료한 뒤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나) 자격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의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2) 전형료 비례 환불

-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다)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나. 원서접수 절차

인터넷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지원자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jpg, gif 파일형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6개월 내 사진으로 인물 뒤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은 사용 불가함]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 본교 홈페이지(www.kangnam.ac.kr) 접속
→ 입학원서 접수 대행기관(www.uwayapply.com) 접속



대입 표준 공통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해야 함(부모 및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관련 동의서 확인 후 진행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 공통원서 및 본교 추가 원서



원서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납부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을 확인해야 함. 전형료 납부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 단위를 변경하거나(기재사항 수정 불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전형료 결제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전형료 납부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 불가



수험표 출력 | 접수완료 확인 후 수험표 출력(본인 보관용)



서류제출 송부(해당자)

- 제출기한 : 2024.07.11.(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발송용 봉투 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로그인 후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 제출주소 : (우)1697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40 강남대학교 본관 110호 입학전형관리팀

-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하므로 방문접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본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면 수능성적 자료 온라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모집요강이 필요한 경우 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Download 받아 사용 하기 바랍니다.

* 본 대학교는 원서접수 대행 기관을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 처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를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 대학교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므로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원서접수 문의 : (주)uwayapply (1588-8988)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 가)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취소 처리됨
나)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2) 복수지원 금지사항

-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 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 정원내, 정원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제외)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 횟수를 산정함
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라)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마)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바)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3) 이중등록 금지

- 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나)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문서등록 포함)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문서등록 포함)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타 대학에 충원합격자는 충원 기간 중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등록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자체 없이 무효로 처리함
라)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선 등록한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개인정보 제공 활용

- 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자료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음
나) 본교 원서접수를 완료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최종 등록 시 교내 학사관리 및 교육행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다) 원서접수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수신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 안내, 입학 전 안내사항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 등)을 제공함

5) 그 밖에 유의사항

- 가)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나)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작성 오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다) 전형료 결제(입금) 뒤에는 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함
- 라) 제출된 입학원서 및 전형 관련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마) 원서의 모든 기재정보는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원서접수 시 흥과 학생부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팀(031-280-3851~2)으로 연락하여 수정 요청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
- 바) 입학원서에 지원자와 부모의 국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합격자 발표 시 연락두절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추가합격 3차 이후 개별 통보 중 지원자 및 보호자와 5분 간격으로 3번 통화 시도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등록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다음 순위 지원자에게 합격순위가 넘어감
- 사)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하고,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아) 입학전형 결과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학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 및 순위와 상관없이 입학사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응시하거나 이에 공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후에라도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차) 위 사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2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카)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학이 취소된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계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름

4 지원자격

공통학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24학기)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가'의 자격구분별 자격요건과 '나'의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세부 심사기준 p.10~12 참조)

- *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연속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와 외국 간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기준을 유지해야 함**
- * 국내·외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인가 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 **국내·외 검정고시, 험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가.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자격구분	자격요건
재외국민과 외국인 (2% 이내)	<p>부모 중 1인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근무자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외국에 체류한 자(공무원, 국외근무 상사직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현지 자영업자, 현지 취업자 등) * 국외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국의 영업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영업활동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p>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IK 기준(외국인, 결혼이주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중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이상 이수자 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4. 강남대학교 어학교육원 3급 이상 수료자 5. 한국 정규대학 어학교육원 3급 이상 수료자 - 향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결과에 따라 한국어능력 충족 조건 변동 가능 - 강남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졸업의 요건 중 어학요건 만족 시 졸업 가능(외국인 결혼 이주민에 한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나.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

자격구분	국외 재학·근무·체류 최소 인정기간				
	학생		국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사업/영업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2% 이내)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총 고교과정 3년 이상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이상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전 교육과정 이수자	초·중·고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5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지원자격 인정기간 심사기준

구분	세부내용										
학생의 국외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국외근무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함(비연속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제 3국 수학 미인정) - 국내 이수학기와 외국 이수학기가 중복된 경우 외국학기를 우선 인정함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학사일정 : G8(19.8.1.~20.6.23), G9(20.8.1.~21.6.23.), G10(21.8.1.~22.6.23.) 재학기간 : G8(19.9.1.~20.6.23), G9(20.8.1.~21.6.23.), G10(21.8.1.~22.6.23.) → G8 도중 편입으로 인해 재학기간이 1개월 부족하므로, G11 1개월 추가 재학 필요 G8(19.9.1.~20.6.23), G9(20.8.1.~21.6.23.), G10(21.8.1.~22.6.23.), G11(22.8.1.~8.31.) 										
부모의 국외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해야 함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상 국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국외상사의 경우 국외파견 발령기간 기준, 현지 취업자의 경우 입사일~퇴사일 기준, 기타 해당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현지 세금 납입 기간 기준)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 										
학생 및 부모의 국외체류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3개년도(6개 학기)에 대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부모는 2/3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부모의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부모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함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파견(국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국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음(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기 간</th></tr> </thead> <tbody> <tr> <td>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td><td>국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td></tr> <tr> <td>부모 국외근무기간</td><td>국외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일</td></tr> <tr> <td>학생 국외재학기간</td><td>국외학교 전입일(편입일) ~ 전출일(졸업일)</td></tr> <tr> <td>국외체류일수 인정 기준</td><td>체류일수 인정 기간</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방학 및 휴일 등에 무관하게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구 분	기 간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	국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	부모 국외근무기간	국외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일	학생 국외재학기간	국외학교 전입일(편입일) ~ 전출일(졸업일)	국외체류일수 인정 기준	체류일수 인정 기간
구 분	기 간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	국외재학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										
부모 국외근무기간	국외파견 시작일 ~ 파견 종료일										
학생 국외재학기간	국외학교 전입일(편입일) ~ 전출일(졸업일)										
국외체류일수 인정 기준	체류일수 인정 기간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사례	<p>[사례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일정 : G9(19.3.2.~12.31.), G10(20.3.4.~12.31.), G11(21.2.28.~12.31.) 재학기간 : G9~G11(19.3.2.~22.3.1) 체류일수 산정 : 다음의 각 기간에 대하여 부모는 2/3 이상, 지원자는 3/4 이상 국외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1 : 2019.03.02.~2020.03.0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 2 : 2020.03.02.~2021.03.0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 3 : 2021.03.02.~2022.03.0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p>[사례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일정 : G9(19.3.2.~12.31.), G10(20.3.4.~12.31.), G11(21.2.28.~12.31.), G12(22.3.2.~12.31.) 재학기간 : G9 도중 편입, G9~G11+G12(19.4.2.~22.4.1.) 체류일수 산정 : I, II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 <table border="1"> <tbody> <tr> <td>I</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9.4.2.~20.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20.4.2.~21.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21.4.2.~22.4.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td></tr> <tr> <td>II</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9.4.2.~20.3.1.+21.3.2.~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20.3.2.~21.3.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21.3.2.~22.3.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td></tr> </tbody> </table>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9.4.2.~20.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20.4.2.~21.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21.4.2.~22.4.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9.4.2.~20.3.1.+21.3.2.~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20.3.2.~21.3.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21.3.2.~22.3.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9.4.2.~20.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20.4.2.~21.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21.4.2.~22.4.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1 : 19.4.2.~20.3.1.+21.3.2.~4.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2 : 20.3.2.~21.3.1. (365일 기준, 부모 243일 이상 / 지원자 273일 이상 체류) - 기간3 : 21.3.2.~22.3.1. (366일 기준, 부모 244일 이상 / 지원자 274일 이상 체류) 										

<학력요건 및 국외재학기간 관련 자격 충족·미충족 사례>

Case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 여부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1	재학 기간						D	D	D	D	D			불인정
		A	A	A	A	A	A	A	A	A	A	A	A	
2	재학 기간						D	D	D	D	D	A	A	불인정
		A	A	A	A	A	A	A	A	A	A	A	A	
3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인정
4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A	A	A	불인정
											A	A	A	
5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인정
6	재학 기간	D	D	D	누락	D	D	D	D	D	D	A	A	불인정
						A	A	A	A	A	A	A	A	
7	재학 기간	D	D	D	D	인정	D	D	D	D	D	A	A	인정
					A	A	A	A	A	A	A	A		

Case	자격충족 여부	상황	학력요건, 국외재학기간 기준
1	미충족	국외재학기간(6학기)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전·편입과정에서의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총 재학학기 23학기)로 충족 국외재학 - 총 5학기로 1개 학기 부족 (자격미달)
2	미충족	국외재학기간(6학기)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중복 재학학기(6-2)로 누락학기(10-1) 인정, 총 24학기 충족 국외재학 - 총 5학기로 1개 학기 부족 (자격미달)
3	충족	국외재학기간(6학기) 비연속	학력요건 - 중복 재학학기(8-1, 8-2, 10-1)를 중복 산정하지 않더라도 총 재학학기 24학기를 충족 국외재학 - 중·고등학교 기간 중 외국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비연속 6개 학기(8-1, 8-2, 10-1~11-2)를 이수하여 기준 충족
4	미충족	국외재학기간(6학기) 중 고등학교 1년 미포함	학력요건 - 총 24학기 충족 국외재학 - 6개 학기 중 고등학교과정이 1개 학기만 포함되어 국외재학 기간 기준 미달
5	충족	학력요건(24학기) 중 1개 학기 부족	학력요건 - 전·편입과정에서의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총 재학학기 23 학기)로 만족 국외재학 - 6개 학기(10-1~12-2) 만족
6	미충족	증복학기로 누락학기 대체 인정	학력요건 - 총 재학 학기 21학기. 증복 학기(5-1, 5-2)는 누락 1개 학기로 대체 인정 가능함. (2개 이상 연속된 증복이수학기라도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인정함) -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더라도 22학기로 부족 (자격미달) 국외재학 - 6개 학기(10-1~12-2) 만족
7	충족	증복학기로 복수의 누락학기 대체 인정	학력요건 - 총 재학 학기 21학기. 증복 학기(2-2)는 누락 학기(4-2)로, 증복 학기(6-2~7-1)은 누락 학기 (9-1)로 대체 인정 가능함.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여 총 23학기로 자격 인정 국외재학 - 비연속 6개 학기 (7-1~8-2, 11-2~12-2) 만족

나. 외국학교 교육과정 세부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외국학교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외국학교로 인정하며, 외국의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 흠클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공통사항]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총족) <table border="1"> <thead> <tr> <th>외국학교 과정</th><th>1학년</th><th>2학년</th><th>3학년</th><th>4학년</th><th>5학년</th><th>6학년</th><th>7학년</th><th>8학년</th><th>9학년</th><th>10학년</th><th>11학년</th><th>12학년</th></tr> </thead> <tbody> <tr> <td>우리나라 학제</td><td colspan="6">초등학교 과정</td><td colspan="3">중학교 과정</td><td colspan="3">고등학교 과정</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국내고교 및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도 총 재학기간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함 국내·외 검정고시, 흠클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추가사항]	<p>[전 교육과정 이수자 추가사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에게는 적용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학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 타당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근거 : 교육부 대입정책과-1083(2021.02.02.)]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개시일(수업시작일)과 수업종료일이 명시된 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등)를 충분히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인정받지 못하는 재학기간 발생 등)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지원자격 검토 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근무자의 근무, 학생의 재학, 학생 및 부모의 체류 등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전형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6 전형방법

가. 전형유형 및 방법

전형유형	전형형태	전형방법	총점
전 모집 전형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	100점

나. 합격자의 결정

- 1) 선발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임
- 2) 북한이탈주민과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함
- 3) 합격자는 전형방법에 따라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 4)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발표 시 후보순위를 발표하며,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은 후보순위에 따라 충원함
- 5) 그 외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요소 중 인성 > 전공적합성 > 학업능력 점수 순

7 서류평가 안내

가. 서류평가

1) 평가방법

- 가) 지원자의 제출 서류(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등)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합계
	인성	학업능력	전공적합성	
배점	30	40	30	100

2) 서류평가 유의사항

- 가) 교과 성적 외의 학업 능력 및 학습에 대한 노력 또한 본교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와 비교과활동의 항목별 비중은 없으며, 본교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지원자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함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사항 처리

- 1) 학교생활기록부(또는 성적증명서) 기록 중 지원자 본인의 성명, 출신고교 및 부모 직업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 등 대체문구로 전환되어 평가에 미반영함
- 2) 위 블라인드 처리 항목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교에서 추가로 블라인드 처리함

8 제출서류

자격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2% 이내)	입학원서	- 인터넷 접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재학기간 심사표	- 본교 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
	비교과활동 기록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출력물 제출 불필요) - 작성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P.19 참조)
	학력조회동의서	- 본교 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 - 재학한 외국소재 중·고교는 모두 제출 - 중·고교과정이 통합된 학교는 1부만 제출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제출 생략
	외국학교 조사표(재학한 외국소재학교 모두 기재)	- 본교 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 - 학기 개시일(수업시작일)과 수업종료일이 명시된 자료 (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등)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학생생활기록부)	- 학년, 입학(전입)일과 졸업(전출)일 명시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시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 정부24(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발급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부, 모, 학생 각 1부
	여권 사본	- 부, 모, 학생 각 1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외거주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각 1부 - 영사24(인터넷), 국외주재영사관 또는 외교부 별관(종로구) 발급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추가 제출서류]	- 부 또는 모 기준 1부 - 국외 근무 국가 및 기간 명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 및 자영업자 추가 제출서류]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추가 제출서류]	- 회사명 명시,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 대외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 세금납입증명(소득세 납부기록) 대체 가능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현지 자영업자 추가 제출서류]	- 사업체명 명시(법인세), 국외근무자 성명 명시(개인소득세) -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파송선교사확인서 [선교사 추가 제출서류]	- 소속종교단체, 선교 국가 및 기간 명시
북한이탈주민	입학원서	- 인터넷 접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 발급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시에도 지원 가능하나, 새터민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학력확인서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제출 - 학력인정증명서(각 시·도 교육청 발급)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입학원서	- 인터넷 접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재학기간 심사표	- 본교 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
	비교과활동 기록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출력물 제출 불필요) - 작성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P.19 참조)
	학력조회동의서	- 본교 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 - 재학한 외국소재 중·고교는 모두 제출 - 중·고교과정이 통합된 학교는 1부만 제출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제출 생략
	외국학교 조사표(재학한 외국소재학교 모두 기재)	- 본교 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 및 제출 - 학기 개시일(수업시작일)과 수업종료일이 명시된 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등)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학생생활기록부)	- 학년, 입학(전입)일과 졸업(전출)일 명시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생활기록부)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학생
	신분증 사본	- 학생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외거주사실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추가 제출서류]	- 학생 - 영사24(인터넷), 국외주재영사관 또는 외교부 별관(종로구) 발급
	외국국적증명서(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 외국시민권은 외국국적 취득일자 포함
	외국인등록증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 국적취득일 명시 -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훈인관계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 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관련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종점 관리 국가 소재 학교에서 학위(학력) 취득자는 아래 중 택1 (중국의 경우 3만 가능)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이상 이수증 및 성적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류 2.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강남대학교 어학교육원 4급 이상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3.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타 4년제 대학 어학교육원 4급 이상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종점관리 5개국

- 고시 2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유학생 종점관리 국가 :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서류제출 유의사항>

- 입학원서, 서류심사 신청서, 학력조회동의서, 외국학교 조사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 (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되(2024.04.01.(월) 이후 발급된 서류), 재발급/추가발급이 불가능한 국외 발급 서류에 한하여 해당 기간 이전 발급 서류 제출 가능
- 원서접수 당시 자격요건 충족 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합격자는 2025.02.21.(금)까지 자격요건의 최종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 예시
 - 2023년 2학기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 합격자로, 10학년 1학기~12학년 2학기로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원서접수 시점(7월)에 제출한 자격 관련 서류 상 12학년 2학기의 국외근무기간, 국외체류기간, 국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에 대한 최종 증명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합격 및 등록 후 2025.02.21.(금)까지 최종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외근무기간 확인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 국외체류기간 확인 : 지원자, 부, 모의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 국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 확인 : 지원자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서접수 당시 국외 학교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2025.02.21.(금)까지 외국에서 발행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미인정),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국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한글공증본 첨부)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등 발행 서류의 경우 당해 학교장 직인으로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대체함 [문의처 : 외교부(02-2002-0251/0252)]**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및 기타 특이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지원자 정보(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가 전체 공개된 원본(또는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제출서류에 한하여 본교에서 원본 대조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합/불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9 합격자 발표 및 등록·환불 안내

가. 합격자 발표 및 문서등록

1) 최초합격자 발표 및 문서 등록

구분	일자	장소	참고
합격자 발표	2024.12.13.(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문서등록 기간	2024.12.16.(월)~12.18.(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서류를 통한 등록여부 확정 의사표현)-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등록기간 중 미등록자는 합격을 취소함

2) 추가합격자 발표 및 문서 등록

구분	일자	장소	참고
합격자 발표	2024.12.19.(목) ~ 12.26.(목) 18:00까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3~5차 추가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문서등록 기간	2024.12.16.(월) ~ 12.18.(수)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문서등록(서류를 통한 등록여부 확정 의사표현)-문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등록기간 중 미등록자는 합격을 취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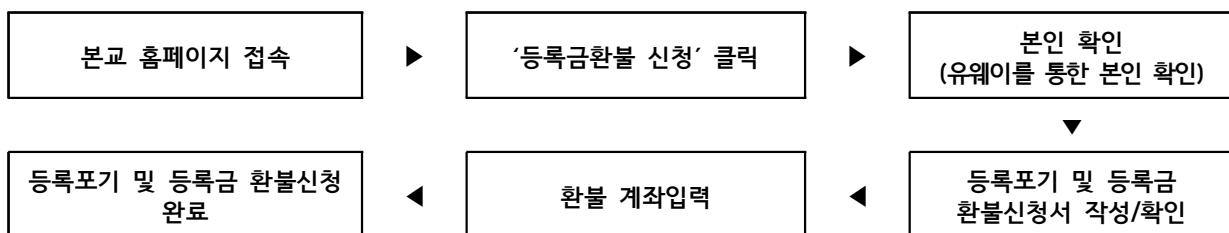
3)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 2025.02.10.(월) ~ 02.12.(수)

4)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 가) 문서등록 취소 : 문서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하여 해당 대학에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일까지 문서등록을 취소해야 함
[문서등록 취소기간 : 추후 입학홈페이지 안내]
- 나) 문서등록 취소 신청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문서등록 취소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

나. 등록 포기 및 환불

- 등록금 환불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려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 안에 등록 포기와 환불신청을 해야 납입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
- 등록금 환불 신청기한 : 추후 입학홈페이지 안내
- 이후에는 교육부 반환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불함
- 환불신청절차



5) 유의사항

- 가) 환불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에 유의하고 확인서를 출력하여 잘 보관함
- 나) 당일 17시 이전 환불신청은 다음날에 처리되며, 금요일 12시부터 일요일 까지의 신청자는 월요일에 환불처리 됨
- 다) 환불완료에 대한 확인은 등록확인 절차와 같음

10 그 밖에 수험생 유의사항

1.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2.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제출서류 위·변조, 대리시험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해당년도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4. 입학생은 대학에서 학력조회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원서의 모든 기재정보는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원서 접수 사항과 학생부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팀(031-280-3851~2)으로 연락하여 수정 요청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
6.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합격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7.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운영규정 제 16조에 의거해 학생부종합전형 전형결과에 대해 수험생은 입학전형관리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8. 대학별고사 등 전형 진행과정에서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특별 지원이 필요하여 사전 연락할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함
9. 신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학과 동시에 휴학할 수 없음
10. 본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서 창학 이념인 “敬天愛人” 실현을 위해 모든 신입생은 졸업 시까지 「기독교와 현대사회」 2학점과 「채플」 4학기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11. 이외 사항은 입학 후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2.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비교과활동 기록표

전형구분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과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이수자
수험번호	
성명	
모집단위	

유의사항
<p>■ 비교과활동 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동아리활동, 봉사활동: <u>고등학교 재학 중</u> 취득한 자료 및 활동기록만 평가에 반영함 • 학교생활기록부(혹은 성적증명서) 내 기재된 비교과활동에 대해서는 '비교과활동 기록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교과활동 내용은 최대 연번 5개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p>■ 비교과활동 기록표 기재금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작성부분 내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각종 공인어학시험 실적자료 및 교과관련 수상실적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장학생 및 장학금 수혜내용과 관련해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도서출판,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p>■ 활동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비교과활동 기록표에 기재한 항목에 한하여 활동증빙서류를 <u>A4 사이즈 10페이지 이내 제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과활동 기록표'의 연번을 활동증빙서류 우측상단에 기재하고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연번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해당 활동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비교과활동 기록표'에 기재한 내용이 원본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활동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 불가한 증빙자료(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기관(학교 포함)이 없는 서류 및 실적물 - 비문서 형태의 자료(CD, USB, 사진 등) - 교육과정 이수 중 본인이 작성한 자료(에세이 내용, 각종 포트폴리오, PPT 발표자료 등)

연번	활동명	활동내용(최대 100자 이내 작성)	발행기관
1			
2			
3			
4			
5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재학기간 심사표

▶ 지원사항

지원사항	수험번호	지원학부(과,전공)

▶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자 성명	한글	국적	주민등록번호													
	영문			-												
최종 출신고교		졸업일자	년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일 졸업 <input type="checkbox"/> / 예정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긴급 연락처	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	-									
본인 전화번호		핸드폰		1)				핸드폰	1)							
				2)					2)							
연락처	주소			3)				3)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는 보유국적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는 (남자)5999999 (여자)6999999으로 기재 (예, 여자 외국인일 경우 → (생년월일6자리)-6999999)

▶ 자격구분 및 특이사항 : 해당란에 √ 표기바람.

지원유형	자격구분	특이사항
정원 외 2% 이내	<input type="checkbox"/> 국외근무자의 자녀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월반, 휴학, 종복기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제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지원학생 관련 기재사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기재함) - 해당란에 표기바람.

학교명	재학기간		학교 소재지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Grade), 학기 (예: 해당 칸에 "V" 표시)															
	기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1)	8(2)	9(3)	10(1)	11(2)	12(3)	13	14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초등학교	.. ~ ..	년 개월																		
	.. ~ ..	년 개월																		
	.. ~ ..	년 개월																		
	.. ~ ..	년 개월																		
중학교	.. ~ ..	년 개월																		
	.. ~ ..	년 개월																		
	.. ~ ..	년 개월																		
	.. ~ ..	년 개월																		
고등학교	.. ~ ..	년 개월																		
	.. ~ ..	년 개월																		
	.. ~ ..	년 개월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총 외국체류기간		년 개월									

▶부모 관련 기재사항 [국외 거주기간 및 근무(영업)기간]

구분	국외거주(근무)기간		거주지/근무지		학생의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Grade), 학기 (예: 해당 칸에 "V"표시)															
	기간	거주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	2	3	4	5	6	7(1)	8(2)	9(3)	10(1)	11(2)	12(3)	13	14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영업)기간 (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기재란	● 국적 ()				● 시민권 번호 ()				● 시민권 취득일 ()											
모(母)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영업)기간 (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기재란	● 국적 ()				● 시민권 번호 ()				● 시민권 취득일 ()											

* 위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입력사항 및 서류로 제출한 정보는 전형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보유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지원자격 심사 거부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학력조회동의서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 School Name :
- School Address :
- School E-mail Address :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Kangnam University in Korea for 2024 academic year and agreed that this university could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cooperation to Kangnam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the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incerely yours, (name) _____
(Signature) _____

- Student Name : _____
- Student ID Number : _____
- Date of Birth : ____ - ____ - ____ (mm-dd-yyyy)
- Date of Admission(transfer) : ____ - ____ - ____ (mm-dd-yyyy)
- Date of Graduation(withdrawal) : ____ - ____ - ____ (mm-dd-yyyy)

KANGNAM UNIVERSITY



Address : 40, Gangnam-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Gugal-dong 111) Kangnam University (16979)
TEL : +82 31 280 3500 / FAX : +82 31 281 3604
Web Site : www.kangnam.ac.kr

외국학교 조사표 [작성 예시]

성명	김 강 남	수험번호	K123456	생년월일	2001.12.02
자격구분 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외근무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이수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위	글로벌문화학부

학교명	학교정보	학기 정보 (방학기간 제외)		
<i>Kangnam International School Washington (10/11/12/13 학년제)</i>	학교주소 : 50 Kangnam St Nw, Washington, DC 20422, USA 홈페이지 : www.KNUwashington.com 담당자 E-Mail : KNUwashington@kangnam.ac.kr 전화번호 : +1 202-1234-5678	1학기	2012.03.02	~ 2012.07.28
		2학기	2012.09.12	~ 2012.12.31
		3학기	해당없음	~
		4학기	해당없음	~
<i>(10/11/12/13 학년제)</i>	학교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i>(10/11/12/13 학년제)</i>	학교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i>(10/11/12/13 학년제)</i>	학교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위의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 (인)

- **국외 소재 초·중·고교의 정보만 기입하며, 학교별 대표 일정을 하나씩만 명기함(학년별로 기입할 필요 없음)**
- 3학기, 4학기 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
- 각 학교 학제 및 학기일정 확인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원서접수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색상이 어두운 란만 신청인이 작성합니다.(보호자 및 학생 본인 각각 1부씩 작성)
- 보호자,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예 : 여권사본)**
-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v]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1) copy(ies)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 학력요건(3년 또는 12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입력				

용도 (Purpose) 대학입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강남대학교 입학처	-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031-899-7142	대학 입학 심사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인 Applicant Name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